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을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25

발의연월일: 2024. 12. 5.

발 의 자:정을호·이기헌·김남근

오세희 • 추미애 • 백승아

조승래 · 김준혁 · 김동아

차지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,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현행법에서는 의원 구성 및 임기 등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근거 및 구성 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만 명시하고 있어 대학평의원 회가 개별 대학의 학칙과 정관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·운영되고 있다 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대학평의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개별 대학별 대학평의원회의 운영편차를 최소화하고 대학평의원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2).

법률 제 호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"2분의 1"을 "3분의 1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"2년으로"를 "1년 으로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 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11 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
- ⑤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의한다.
- 1. 정기회: 학기당 1회
- 2. 임시회: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 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- ⑥ 제5항제2호에 따라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의장은 그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-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평의원 전원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⑧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의장이 궐위(闕位)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평의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⑨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및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.
- ① 회의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 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① 회의는 원격영상회의(평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)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의2(대학평의원회의 설치	제19조의2(대학평의원회의 설치
등)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	프) ①
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	
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	
학평의원회(이하 "대학평의원	
회"라 한다)를 설치 · 운영하여	
야 한다. 다만, 제2호 및 제3호	
는 자문사항으로 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6.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
	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
	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
<u>6.</u> (생 략)	<u>7.</u> (현행 제6호와 같음)
②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	2
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	
며, 교원, 직원, 조교 및 학생	
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	
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	
되,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	
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	
할 수 있다. 이 경우 어느 하나	
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	
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(定	

數)의 <u>2분의 1</u>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.

- ③ 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, 평의원중에서 호선한다.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호선한다.
-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.
업기는 1년으로 한다.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u>3분의 1</u>
③
<후단 삭제>

- ④ -----<u>1년으로</u>-----. <u><단서 삭제></u>
 - ⑤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의한다.
 - 1. 정기회: 학기당 1회
 - 2. 임시회: 의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 - ⑥ 제5항제2호에 따라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의장은 그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 - ⑦ 의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

<신 설>

<신_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의의 목적을 밝혀 각 평의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평의원 전원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⑧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의장이 궐위(關位)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⑨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및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.

① 회의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① 회의는 원격영상회의(평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)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.

⑤ ∼ ⑦ (생 략)

① ~ ④ (현행 제5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)